

학생복지시설운영관련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내 학생자치 및 복지관련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생누리관 단위실

제2조 (단위실 사용) ① 학생누리관 내 학생회자치실, 동아리방, 동아리연습실(이하 “단위실”이라 한다) 등은 세미나, 소학회, 소모임 등 서울여자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공유하며, 사용일지로 관리·운영한다.

② 단위실의 출입문은 소속주체(학생회, 동아리) 장의 관리 아래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③ 단위실 내부는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물(탁자, 의자, 서랍장) 이외의 물품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매트, 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④ 단위실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로 벽면을 도색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단위실은 교내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므로 외부인에게는 개방하지 않는다. 단, 활동목적에 맞는 업무를 위하여 외부인을 초청할 경우 사전에 학생지원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단위실 이용시간) ① 모든 단위실의 사용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단,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오전 12시까지 가능하다.

② 제2조제5항의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오후 10시까지로 시간을 제한한다.

③ 24시간 개방은 서량제, 학술제, 선거 및 개표와 관련된 행사일 경우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없다.

제4조 (안전관리) ①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인 구조변경이나 인화성 물질을 반입할 수 없다.

② 각 단위실 내에서는 취사, 음주, 흡연을 할 수 없다.

③ 단위실 내에 있는 비품을 무단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외부의 물품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단위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열기구 및 취사도구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분별하게 멀티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제4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키지 않아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시설물관리) 각 단위실 소속 주체의 장은 단위실 내에 비치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파손 또는 훼손이 된 경우 학생지원팀에 신고하고 수리와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생복지시설

제7조 (복지시설) 복지시설이라 함은 교내에 설치된 단과대학 휴게실, 인터넷카페, 파워더룸 등 학생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시설물을 칭한다.

제8조 (복지시설의 관리) ① 각 단과대학에 설치된 휴게실 및 파워더룸은 단과대학 학생회에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인터넷카페는 학생지원팀에서 관리, 운영한다.

② 복지시설의 운영시간은 건물의 개방시간에 맞춰 운영한다.

③ 사용자는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복지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학생지원팀에 즉시 신고하고, 수리와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의 허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복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학생지원팀과 협의하여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12 제18차 교무위원회>)